

IV. 주요국의 보험금 지급기한제도

1. 일본

- 일본의 경우 보험금 지급시기는 보험법이나 보험업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별약관에서 규정한 상태로 운영되어 오다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보험법에서 “보험금부의 이행기”라는 조문으로 손해보험(제21조), 생명보험(제52조, 상해질병정액보험(제81조)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1항은 보험금부를 이행할 기한을 약정한 경우일지라도 손해조사가 필요한 경우의 보험금 이행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보험금 지급기한이 보험사고, 담보손해액, 보험회사가 면책할 사유, 기타 보험금부 이행을 위하여 확인하거나, 보험계약상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때는 당해 기간을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보험금부를 행하는 기한으로 함.
- 제2항은 보험금부를 이행하는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접수한 후, 당해 청구에 관계된 보험사고 및 담보손해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경과할 때 까지는 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제3항은 제2항에 규정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행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조사를 방해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부의 지연기간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7) 福田称夫,古笛恵子, 『逐條解説 改正保険法』, 2008.9

- 일본 보험회사들은 보험법의 시행 내용이 과거계약에도 소급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시기와 관련한 사항을 보험약관에 보다 명확히 하고 있음.
 - 보험법시행전에 비해 보험금 지급기일은 보험약관에서 보험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생명보험은 영업일 5일 이내, 손해보험은 30일로 제한⁸⁾하는 것은 동일함.
 - 하지만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조사사유와 각 조사사유에 대한 조사기간을 명시적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보험회사들의 조사사유와 조사기간은 획일적이지 아니하고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 일본 ING생명은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여부, 면책사유 해당가능성,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약관상 영업일 5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

8) 보험법이나 보험업법상에 보험금지급기한을 명시적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의 5일과 손해보험의 30일은 보편적인 기한임.

<표 8> 일본 ING생명의 보험금 지급기한 운영현황

조사 확인 사항	지급기한 연장 내역	
	지급기한 연장 사유	지급기한
①보험금 지급사유의 해당유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0일
②면책사유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고지위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의사의 조회를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	60일
④약관 등에 정한 무효, 중대사유, 사기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변호사나 법령에 기초한 조회를 하는 경우	120일

주 : 닛세이생명의 경우에는 지급기한 연장사유별 지급기한의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180일로 운영

- 일본후지카사이(富士)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유무와 면책사항, 보험금산출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약관상 지급기한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표 9> 일본 후지카사이손보의 보험금 지급기한 운영현황

조사 확인 사항	지급기한 연장 내역	
	지급기한 연장 사유	지급기한
①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찰, 검찰, 소방 등 공공기관의 수사, 조사결과 조회	180일
②면책사유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검사기관 등 전문기관의 진단, 감정결과 조회	90일
③보험금산출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해정도, 사고와 생해의 관계, 치료 경과 등)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재해의 피재지역 조사	60일
④계약효력 유무, 사기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후유장해의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진단, 전문기관의 심사결과 조회	120일
	국내에서 대체적 수단이 없는 경우 국외 조사	180일

자료 : 일본 후지카사이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http://www.fujikasai.co.jp/announce/medical.shtml>)

2. 미국

- 미국의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규제는 일반적인 법리인 “신의 성실의무(Duty of Good Faith)”개념에 기초하고 있음.
 - 신의성실의무 원칙은 보험회사의 행위가 피보험회사의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한 경우, 공정하게 고려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이익의 균형이 보험회사에 의해 의도적으로 상실된 경우에 적용됨.
 - 이러한 신의성실의무⁹⁾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실제 손해액 이상의 징벌적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해야 하며,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한 불공정손해처리행위방지모델법(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이 운용되고 있음.
- 또한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고접수사실 통보제도와 보험금지급 기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9) 2010년 7월 현재 신의성실의무 위반시 징벌금부과를 채택하지 않은 주는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뉴저지, 오키오 등 4개 주임.

<표 10> 미국의 주별 보험금 지급기한 운영현황

주별	보험종목	사고접수 사실 통지기한	보험금 지급기한	신의성실 위반 배상금
뉴욕	자동차보험	접수후 30일	접수 후 30일	있음
	건강보험	접수후 30일	접수 후 45일	
	기타 보험	접수후 15영업일	인정 후 5일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	접수 후 30일	있음
	기타보험	-	-	
뉴저지	자동차자손	-	접수 후 60일	없음
	당사자보험	접수후 10영업일	접수후 30일	
	제3자보험	-	접수후 45일	
	자동차대인	-	접수후 90일	
	건강보험	-	접수후 60일	
	생명보험	-	사망: 사후 60일 기타 : 30일	
아칸소	전종목	접수후 10영업일	-	한도제한
오하이오	손해보험	-	인정 후 10일	없음
	건강보험	-	접수 후 24일	
	기타보험 (생보제외)	접수후 10영업일	인정후 5일	
바몬드	전종목	접수후 10영업일	접수 후 30일	있음

주 : 1) 사고접수기한을 규정하지 않은 주는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28개주임.

2) 보험금지급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주는 아칸소, 인디애나, 위스콘신 등 14개주임.

자료 : 損害保險總合研究所, 『歐美損害保險會社における損害調査實務の現状分析』, 2008.9, p.260
및 <http://www.badfaithinsurance.org/statelaws.html> 참조

○ 보험사고 접수통지기한은 최저 10일에서 최대 30일 이내, 보험금지급기한은 최저 5일에서 최대 90일로 주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 보험회사가 명확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감독당국은 보험회사를 처벌할 수 있으며, 소송의 제기도 가능함.

3. 유럽

- 영국은 보험회사의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협회인 ABI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나, 2001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이 제정되면서 금융청이 2005년 1월에 제정한 보험업무행위규준(ICOB: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의 제7장에 손해조사가 규정되었음.¹⁰⁾
 - 손해조사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금지급기한에 대해 개인계약만 사고접수 후 5영업일 이내로 되어 있음.
- 2008년 1월에 개정된 ICOBS(ICOBS : New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에 의하면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신속하고 공평하게 손해조사를 해야 한다는 기본방침과 자동차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책임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이 명확하게 견적된 경우 3개월 이내에 합리적인 보상액을 피해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전체손해액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이유를 회답해야 함.
 -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영란은행의 공정금리에 4% 가산한 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함.
- 독일의 경우 보험금부의 이행시기는 국내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 공정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계약법 제14조(보험금부의 이행기)¹¹⁾에 규정하고 있음.

10) 損害保険総合研究所, 『歐美損害保険會社における損害調査實務の現状分析』, 2008.9, pp. 28-29

11) 新井修司, 金岡京子, ドイツ保険契約法(2008年 1月1日 施行), 2008.8, p.12

- 보험회사의 지급시기는 보험사고나 보험회사의 급부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조사가 종료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 보험사고의 통지가 1개월을 경과할 때까지 확인조사가 종료되지 않을 때에는 계약자는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지연이자 지불의무 면제합의를 하였더라도 무효로 규정
- 프랑스의 자동차대인사고의 보험금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의해 제시된 보상금액에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는 합의 성립 이후 4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지체에 대해 법정이자의 50%를 가산해주어야 하며, 2개월 초과지체는 법정이자의 2배를 더 지급해주어야 함.